2019년도 제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o 일 자 : 2019. 4. 17.(수요일)

o 방 법 : 온라인심의

o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 전응준(분과위원장)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회의안건 및 결과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0건(안건번호 제2019-16911호~1696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 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모두 최근 상영된 영화의 불법복제물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적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도 없다고 보이는 바, 시정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B 위원: 16911-11960호의 경우 불법 복제물이 대부분 2019년 공개된 최신작이므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판단되어 시정 권고 가결함
- C 위원: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 중에는 금년 상반기(2월 이후) 극장에서 개봉된 "항거: 유관순 이야기"를 비롯한 최신 영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갭틴마블"과 같은 영화는 극장에서 불법 녹화된 것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녹화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저작물이 불법 복제 전송됨으로써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제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24.

위원 박성호

위원 임진모

분과위원장 전응준